

기업 금융 및 자금관리
국제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조세 감면



수많은 국제 자금관리 활동에서 파생하는 금융이익은 조세 우대 대상

국제 경영을 위한 유동성 관리

- 비주재 회사와 단기 투자 거래(파생상품 제외)(2008년 신규)
- 비주재 계열사를 대상으로 모든 통화로 대출 및 예금
- 국내 비주재 회사가 발행하여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국내 주재 회사 대신 관리
- 국내 비주재 계열사를 위한 투자 관리

직접 금융 리스로 비주재 회사 대상 리스

행정 서비스

- 비주재 금융 사업체의 금융 활동과 직접 관련한 행정 활동

비주재 회사를 위한 외환 관리

비주재 회사를 위한 금융 상담 및 연구

팩터링 및 매출채권

- 상환청구 불능 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을 비주재 회사로부터 회수
- 비주재 회사 대신 비주재 회사들로부터 무역 매출채권 회수

금융 위험 관리

- 비주재 회사 인력 또는 재산과 관련한 생명, 질병, 사고 이외의 위험에 대한 보험 가입 또는 재가입. 캡티브 보험회사 포함.

관리 서비스

- 기업의 본사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로 비주재 지사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략적 관리 서비스 및 급여, 복지 관리, 채용과 선발, 훈련과 개발 등의 인적 자원 서비스.

국제금융활동(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IFA)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가 벌어들이는 금융이익은 주정부 소득세 전액 환급 대상이며, 2009년도 연방 기업 소득세율 19%만 적용됩니다.

특정 경우에는 직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FA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에서 일하려고 캐나다 외부에서 오는 직원은 IFA 전문가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IFA 취업 소득에 부과되는 BC주 세금의 75%를 최대 5년간 환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IFA 전문가는 특정 전문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캐나다 외부에서 진입되어야 하며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고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따라 해당 전문가는 근무 시간의 70%를 국제금융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무 지원 서비스, 행정 지원 서비스, 관리 서비스, 특허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는 IFA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사에 적용되는 기업 순소득 세율이 15%로 감소됩니다

- 캐나다는 2012년까지 연방 기업 소득세율을 19%에서 15%로 낮출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율은 아래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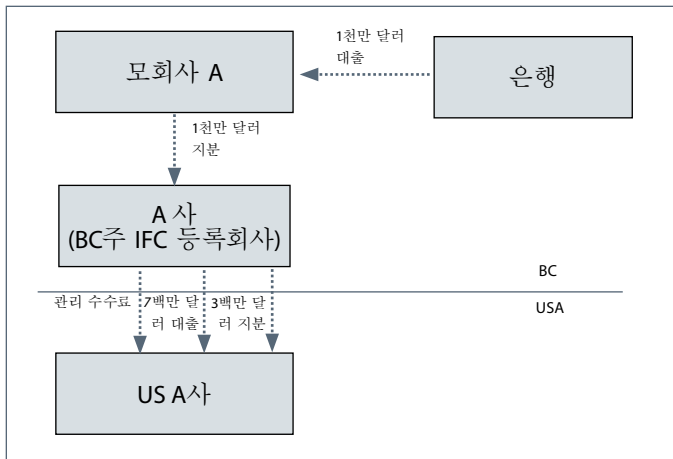
2009	19.0%
2010	18.0%
2011	16.5%
2012	15.0%

- 세율이 이처럼 낮아지면 2012년에 캐나다의 기업 소득세율은 G7 국가 중 최저가 됩니다.
- BC주의 기업 소득세율은 2008년에 12%에서 11%로 감소되었습니다. 기업 소득세율은 2010년 1월 1일부터 10.5%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10%로 더욱 낮아질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구조 단순화로 실제 세율이 2009년에 19%로, 2012년에 15%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 모회사 A가 BC주에 사무소를 두고 캐나다에서 법인화합니다.
- 모회사 A가 현업을 수행합니다.
- 모회사 A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여러 개의 전액 출자 외국 계열사가 있습니다. 모회사 A의 외국 계열사들은 소속 주재국에서 현업을 수행합니다.
- 모회사 A가 A사의 주식 자본 천만 달러를 청약했습니다. 모회사 A가 A사의 지분 청약 자금을 조달을 위하여 은행에서 천만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 A사(BC주 IFC 등록회사)는 모회사 A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 A사는 US A사에 금융 상담과 전략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7백만 달러의 대출과 3백만 달러의 지분 형태로 US A사에 자본을 제공합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자금 조달 구조 활용을 보여줍니다.

- 모회사 A는 은행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기타 수입 부분에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 A사의 외국 계열사는 국내 세법에 따라 과소 자본 및 이자 공제 가능성 제한이 적용되는 A사에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례

가정

- 캐나다 세율 30%
- 미국 세율 40%
- 이자율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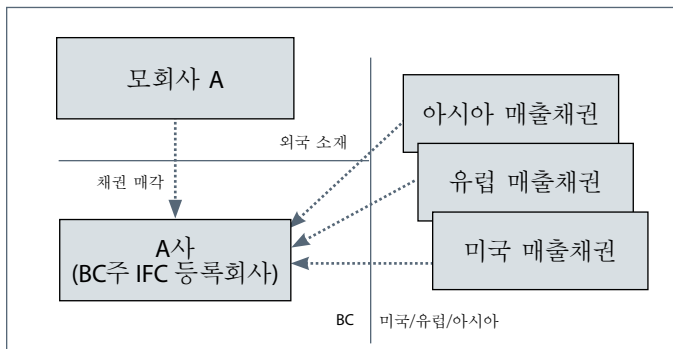
자금 조달 분석

모회사 A의 연간 세금 공제액 (30% 세율에서 1천만 달러 대출에 대한 10% 이자 기준)	30만 달러
대출 이자에 대한 A사의 세금 (19% 세율에서 7백만 달러 대출에 대한 10% 이자 기준)	13만3천 달러
USA사의 연간 세금 공제액 (40% 세율에서 7백만 달러 대출에 대한 10% 이자 기준)	28만 달러

캡티브 팩터링 운영으로 이윤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모회사 A가 A사(BC주 IFC 등록회사)에 상환청구권 없이 채권을 매각합니다.
- A사가 IFC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
- A사가 모회사 A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주재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정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례

가정

- 외국 매출채권: 1억 달러
- 매출채권 회전율: 매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터링 할인: 2%

분석

팩터링 수입 2천4백만 달러
(1억 달러에 대하여 12개월간 2% 기준)

연간 세금 환급 2백6십4만 달러
(BC주 세율 11% 대 BC주 IFC 등록회사 세율 0% 기준)

의견

- 1천만 달러의 외국 매출채권의 경우, 연간 약 255만 달러가 절감됩니다.
- BC IFC 등록회사는 국제 경영을 위한 내부 자금조달 구조 역할을 합니다.
- 이 회사는 2009년 기업 순소득 세율 19%로부터 이득을 취하며, 이 세율은 2012년에 15%로 낮아집니다. 이는 미국의 현행 세율 35%~40%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입니다. 세금 환급은 BC주의 순소득 세율 감축에 따른 절감액의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IFC BC 연락처

브루스 플렉스먼 (Bruce Flexman)

회장

T: 604.683.6627

F: 604.683.6626

E: bflexman@ifcbc.com

국제금융활동(IFA)프로그램은 BC주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이전 중소기업세입부(Ministry of Small Business and Revenue)에서 관리합니다. 유자격 회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부 웹사이트 www.sbr.gov.bc.ca/business/Income_Taxes/International_Financial_Activity/ifja.htm를 참조하십시오.

브리타시컬럼비아 국제금융센터(IFC BC)는 BC주가 기업 투자를 위한 입지로서 지니고 있는 다수의 이점(고등 교육을 받은 다국어 구사 인력, 탁월한 통신 인프라, 높은 생활 수준 등)을 홍보할 목적으로 1986년에 설립된 비영리 협회입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편의상 안내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관련법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금융활동법(International Financial Activity Act)(IFAA)에 따른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IFAA를 해당 특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009년 10월